

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 
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【김학영 의원 발의】



2021. 8. 3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79호로 2021년 8월 19일 김화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제·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, 안 제6조)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(2021. 8. 10. ~ 8. 17./ 7일 간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토지수용법」, 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」 등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·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3. 1. 1. 「토지수용법」(2002. 2. 4. 폐지)과 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 제정되고,
- 2005. 1. 27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항 제41조에 따른 물건의 제거·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5조(응급부담)에 규정되어 있음.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는 「토지수용법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로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1조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5조로 변경하였고,

- 안 제6조에서는 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로, “감정평가에 관한 법령”을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제·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**부칙 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**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.

##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**제45조(응급부담)**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·건축물·인공구조물,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,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
##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**부칙 제12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#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

**부칙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처분·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